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374
- 제 출 자 : 김용석의원(도봉)외 9명
- 제 출 일 : 2016년 8월 16일
- 회 부 일 : 2016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결과의 보고가 누락되고 있어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 나.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와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6.8.24.~8.3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감사결과 의회보고 의무화(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감사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제26조¹⁾는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주요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감법」제39조²⁾에 감사원의 경우 심사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 제20조³⁾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호와 징계규정과 징계시효 등에 대해 자의적인 적용을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제26조(감사결과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⑥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나.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심사결과 통보규정 신설(안 제20조 신설)

- 안 제20조는 감사위원회가 본 조례 제16조 제3호4)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의 자체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심사하며,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 신설)을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20조 제1항은 감사위원회가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0조(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서울시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은 자체감사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 자체 감사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규모와 여건, 공직환경의 변화(청렴관리 의무추가 등) 등을 자체 감사규정에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최근 청렴환경의 변화(박원순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대상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 개선 및 규정 개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감사환경 개선과 효율성 증대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제16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 안 제20조 제2항은 대상기관의 운영실태, 감사기준, 감사 활동수칙 준수, 감사결과, 감사처리 등을 감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은 감사책임자 및 직원을 상위기관 퇴직자 임용,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량과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운영상 독립성 담보가 어려운 상태로 서울시 산하기관의 자체감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운영방식 개선, 자율통제 역량강화,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성과 책임성 제고로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실태와 자체감사 활동에 감사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0조 제3항은 대상기관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감법」 제23조⁵⁾에 따르면 감사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체감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다. 종합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감사위원회가 대상기관의 감사활동에 자문과 활동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 강화 방안고려,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체감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감사위원회는 산+기관의 자체감사가 법적·제도적 개선, 독립성 강화, 전문성 제고, 감사기구 운영방안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 김 태 한	입법조사관 : 정 찬 일
--------------	---------------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